

무역안보 Brief

2025년 무역안보 Outlook

2025

Vol.1

2025년 무역안보 Outlook

무역안보관리원 정책협력실 채수홍 실장

정책연구팀 강은희 팀장, 오정미 연구원, 김주현 연구원, 김지혜 연구원, 조은비 연구원

| 요약 |

- 그간 글로벌 무역안보는 미국이 주도하는 對러/對中 수출통제 및 투자규제 등 무역안보 조치 확대에 따라 각국도 독자적 수출통제 및 투자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여왔음. 기존의 전통적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들은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일부 주요 국가들의 소다자 합의 및 공조를 통한 독자적 수출통제 조치들을 통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관찰되었음.
- 미국의 무역안보 정책은 예전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쳐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음. 양 행정부는 무역안보 접근 방식에 상호 일부 차이는 있었으나, 중국의 첨단 기술 토착화 저지 등 공통의 목표를 추구해 왔음.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 재임 마지막 주간까지도 AI용 반도체칩 및 AI 모델 수출통제('25.1.13), 對중국 파운드리 수출통제('25.1.14), 생명공학 장비 수출통제('25.1.14) 등 강력한 수출통제 조치를 쏟아내었음. 이러한 수출통제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한편, 이러한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따라 중국도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확대하는 등 독자적인 조치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음.
- 미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과 같이 강력한 무역안보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
 - ▲ 통제 범위와 분야를 확대해갈 것으로 전망되며, 첨단 기술에서 나아가 범용 기술까지 통제하는 한편, AI, 바이오, 에너지, 항공우주 등 새로운 산업에서의 통제를 추가해갈 것으로 보임. 한편 중국은 핵심광물 수출통제의 범위를 확대해가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음.
 - ▲ 기존의 통제 메커니즘은 더 강력한 효과를 내도록 운영 방식을 변경할 것으로 보이며, 재수출통제 범위 확대, 새로운 국가군의 설정, 처벌 기준의 강화 등이 예상됨.
 - ▲ 다양한 통제 메커니즘을 결합하는 경향이 더 확대되면서 기술 보호를 매개로 하여 수출, 투자,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의 통제가 총동원될 것으로 보임. 미국의 각 부처의 우려거래자 목록이 점차 상호간 교집합이 증가하면서 異種의 통제가 동시 부과될 수 있음.
 - ▲ 특정 국가를 타깃팅하는 수출통제가 확대되고, 자국 기업 뿐 아니라 타국의 기업에까지 수출통제를 역외적용하게 되면 상호 대립하는 두 국가의 수출통제 법령이 상호 충돌하면서, 경제가 블록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임.
- 본 Outlook에서는 향후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예상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의 신속한 대응에 참고자료로서 제시하였으며,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무역안보 조치들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음.

목 차

I	서론	1
	1. 2024년 미국과 중국의 주요 수출통제 조치	1
	2. 미 트럼프 2.0 행정부의 무역안보 정책 전망	4
II	2025년 무역안보 Outlook: 관찰과 전망,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7
	1. 통제 분야의 확대	7
	1) 범용 사양까지로 기술통제 확대	7
	2) 신기술 통제 확대: AI, 바이오, 에너지, 항공우주	8
	3) 중국의 핵심광물 통제 확대	12
	2. 통제메커니즘의 강화	7
	1) 재수출통제의 범위 확대: Entity list 운영방식 강화 등	16
	2) 국가군 설정의 변경: 정책목표별 타깃 조정	18
	3) 처벌 기준의 강화: 가능성 인식까지 처벌	20
	3. 통제메커니즘의 연계	22
	1) 기술 사양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	22
	2) 우려거래자 목록의 상호 연계	23
	4. 경제 블록화의 심화와 수출통제의 충돌	26
	1) 특정 국가를 타깃팅하는 수출통제	27
	2) 수출통제의 역외 적용	29
	3) 수출통제 법령의 충돌	31
III	결론	34

I. 서론

1. 2024년 미국과 중국의 주요 수출통제 조치

2024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첨단기술 분야를 제외한 일반 범용 제품에 대해서는 정상적 무역을 지속하는 디리스크(De-risking) 기조 하에 첨단반도체 분야에 대한 수출통제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다자간 수출통제를 추진하는 양상을 보였다.

1월에 클라우드 기업이 외국의 고객 정보를 의무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함으로써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를 우회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9월에는 신기술 관련 품목을 EAR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동일한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를 시행중인 파트너국에게는 수출허가예외(IEC)를 신설하였다. 동맹국과의 협력관계를 반영하여 수출통제를 완화하는 조치로서 4월에 동맹국인 호주·영국 대상으로 허가품목 축소·허가예외를 확대해 해당 국가로의 군수품 수출통제를 완화하였고 10월에는 호주·영국·캐나다를 대상으로 우주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 요건을 완화하였다. 해외투자 규제 관련하여 첨단기술 분야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Outbound 투자를 제한하는 세부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어 12월에는 HBM 및 반도체 공정장비 24종과 소프트웨어 3종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함으로써 對중국 HBM 및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였다.

표 1 |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주요 경과

2022.10.7 ¹⁾	2023.10.17 ²⁾	2024.12.2
△고성능 컴퓨팅 칩 對중국 통제 △특정 소수의 반도체 제조장비 對중국 통제 △FDPR 확대(1종 확대/2종 추가)	△반도체칩 통제대상국 확대(중국 →40여개 우려목적국) △반도체 제조장비 통제 확대(품목 확대/통제 대상국 확대)	△반도체칩 통제범위 HBM까지로 확대 △반도체 제조장비 통제 확대 △FDPR 확대(2종 추가)

한편, 중국은 5월에 항공우주 분야에 관련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발표하여 해당 품목을 수출 시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기존에 다자체제에서도 통제하던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는 통제하지 않는 품목도 독자통제 대상에 추가하여 발표되었다³⁾. 7월에는 ‘23년도에 임시 통제로 포함하였던 무인항공기 및 관련 부품의 통제조치를 폐지하고 해당 조치를 조정하여 새로 발표하였다⁴⁾. 이를 통해 무인항공기 품목의 통제기준을 사양기준에서 용도기준으로 변경하였고 WMD 확산 및 테러·군사 용도로 사용될 경우 수출통제의 대상이 되도록 변경하였다. 무인항공기에 사용되는 적외선 영상기기 및 레이저의 통제 기준을

1) 홍연서(2022), “美 상무부 對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 강화”, 수출통제 Issue Report 2022-78호, 무역안보관리원, ‘22.10.14.
2) 홍연서(2022) 외, “美 상무부,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개정 주요내용”, 수출통제 Issue Report 2023-87호, 무역안보관리원, ‘23.11.7.
3) 다자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항공기 및 우주선의 부품, 엔진, 운반체 등과 가스터빈 엔진 제조 관련 장비 등 품목과 중국 독자통제 품목으로 우주복 페이스 윈도우 관련 장비,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 관련 품목 등 38개
4) 다만, 2015년에 발표되었던 무인항공기 통제 사양 기준은 유효한 것으로 남겨둠

완화하고 관성측정장비를 신규 통제하는 등 통제 품목을 일부 조정하였다.

중국은 일찍이 '21년 희토류관리조례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는데, '23년에는 희토류 73개 품목에 대해 수출시 보고의무를 부과하였고 희토류 가공기술을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등재하였다. '24년 6월에는 「희토류관리조례」를 최종적으로 공포하여 희토류를 국가 소유로 규정하고 희토류 관련 품목과 기술의 수출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24.10. 시행). 10월에는 수출통제법의 하위 법규인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최종적으로 공포하였다('24.12. 시행). 동 조례는 핵, 미사일, 생물, 화학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던 기존의 수출통제 조례 등을 통합하여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허가 등 전반적인 수출관리 내용을 규정했다. 동 조례의 특징은 미국의 역외적용과 유사한 조항을 추가하여 해외기업에까지 중국의 수출통제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출대상국을 평가하여 위험등급을 정하고 상응한 통제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종사용자 관리를 위하여 미국의 우려거래자 목록과 유사한 감시목록(美 Entity List 상응) 관제목록(美 Unverified List 상응)을 신설하였다. 최종사용자가 검증에 협조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시목록에 등재하고, 최종사용자 관련 요구사항 위반 시 관제명단에 등재할 수 있다. 조례 발표 후 후속조치로서 11월에는 기존의 핵, 미사일, 생화학 등 분야별로 구분된 리스트를 체계화하고 국제체제 통제번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통제 번호를 부여한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를 발표하였다⁵⁾. 이와 같이 중국이 수출통제 조치의 법적 근거를 차례로 마련하고, 미국이 對중국 HBM 및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발표한 직후인 12월 3일에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 이중용도 품목을 대상으로 對美 수출금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표 2 | 美·中 이중용도 수출통제 관련 비교⁶⁾

구분		미국	중국
자국산 통제품목·기술 활용 생산품	편입품목	외국산 제품이 미국산 품목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포함된 경우 (구체적 비율 제시)	중국이 원산지인 특정 이중용도 품목을 포함, 통합 또는 혼합하여 해외에서 제조된 이중용도 품목 (구체적 비율 제시하지 않음)
	직접제품	미국산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사용하여 미국 밖에서 생산되는 제품(FDPR) * 적용대상 기술과 목적지 등을 특정하여 제시	중국에서 유래한 특정기술과 같은 이중용도 품목을 사용하여 해외에서 제조된 이중용도 품목 * 적용대상 기술과 목적지를 제시하지 않음
수출대상국		5개 그룹으로 구분 ⁷⁾	평가/구분 예정 (현재 미발표)
최종사용자 관리		5개 우려거래자 목록 ⁸⁾	감시목록 및 관제목록* ('25.1.2. 첫 조치 시행, 美 28개 방산기업 등재)

5) 오정미(2024), “중국, 기존 통제 목록 체계화하고 통제번호를 부여한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 발표”, 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77호, 무역안보관리원, '24.11.27.
 6) 오정미(2024) “중국, 수출통제법 하위 법규인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제정”, 수출통제 Issue Report 2024-76호, 무역안보관리원, '24.11.1.
 7) A~E로 분류되는 5개 그룹. A: 4대 체제 회원국, B: NATO 회원국, C: -, D: 특정사유 통제국, E: 테러지원국 및 쿠바
 8) EL(Entity List), DPL(Denied Persons List), UVL(Unverified List), MEU(Military End User List), MIEU(Military Intelligence End User)

| 표 3 | 2024년 시행된 미-중 주요 조치 경과

미국		발표일	중국	
조치	내용		조치	내용
클라우드기업의 외국 고객 정보 보고 의무화 규정(안)	미국의 클라우드 기업이 외국 고객 정보를 보고화 하도록 의무화	'24.1.29.		
안보협력 동맹국인 AUKUS 대상으로 수출통제 완화	호·영 대상 수출허가 대상 품목 축소, 허가예외 적용 확대, 최종사용(자) 통제 축소 * 군수품 관련		'24.4.19.	
		'24.5.30.	항공우주 품목 수출통제	항공우주 관련 품목*수출 시 중상무부에 수출허가 필요 * 항공우주, 가스터빈 엔진, 우주복 페이스 관련 장비 및 기술,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품목
		'24.7.31.	무인 항공기 관련 수출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인항공기의 통제범위를 '용도 중심'으로 변경 '관성측정장비' 신규통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외선 영상 기기 및 레이저' 통제기준 완화
파트너국이 시행중인 첨단기술통제를 EAR에 도입	반도체, 양자, 적층제조 분야 관련 품목을 EAR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통제를 시행중인 파트너국 向·發 허가예외 신설	'24.9.6.		
		'24.10.19	이중용도 수출통제 조례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 미사일, 생물, 화학 분야별로 구분된 기존의 수출통제 조례 통합 임시통제, 통용허가 등 통제 시행 요건을 규정함
동맹국 대상 우주 관련품목 수출통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영국·캐나다에 지역안정 사유로 통제되는 우주관련 품목 수출 시 허가 불요 동맹국에 우주 관련 특정 품목 수출 시 허가 요건 완화 	'24.10.23		
첨단반도체, 양자, AI 분야의 해외투자 제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양자 정보기술, AI 시스템 분야에서 미국인 outbound 투자 금지 및 신고 의무화	'24.10.28		
		'24.11.15	이중용도 품목 리스트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 미사일, 생물, 화학 분야별 조례의 통제 리스트 통합 품목 분류에서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별도 명시 국제 체제 통제번호와 유사한 통제번호 부여
HBM 및 반도체 장비 통제강화	HBM 및 첨단반도체 제조장비 ECCN신설, FDPR 추가, 중국과 관련된 Entity List 등재자 확대를 통한 對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24.12.2.		
		'24.12.3.	갈륨 및 게르마늄 등 對美 수출통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및 초경질 소재 對美수출금지 흑연을 對美 수출 시 엄격한 최종사용(자) 통제

2. 미 트럼프 2.0 행정부의 무역안보 정책 전망

1) 중국과의 디커플링 추구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안보적 위협이라는 입장 하에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과거 중국 화웨이 등 기술 기업에 대해 강력한 수출통제 조치를 부과하거나 미국 내 거래 금지조치를 취하는 등 일련의 차단 조치를 부과하였던 점을 볼 때 중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수출통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Small Yard, High Fence”라는 표현으로 첨단 기술 분야에 한정된 통제를 추구한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향후 트럼프 2.0 행정부는 중국 전체에 대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수출통제를 강화한 디커플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가령 중국을 허가예외 비적용 국가로 설정하거나, 중국으로 수출되는 외국산 품목에 대해 미국산이 조금만 포함되어 있어도 수출허가를 의무화하거나⁹⁾, 또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기준을 강화하여 저사양의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수출통제 메커니즘은 안보적 우려를 사유로 하여 고사양 품목(물품과 기술), 우려되는 사용자, 우려되는 용도에 한정하여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이므로, 관세와 같이 모든 물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무역 조치와 달리 수출통제를 통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전략물자와 같은 통제 대상이 아닌 일반 상업적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어느 정도 디커플링을 구현하는 한편,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수출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기술 기업들을 억제하려고 할 것이다.

과거 트럼프 1.0 행정부가 수출통제 외에도 투자심사, ICT 제품의 미국내 거래 금지 등 다양한 통제 조치를 중국의 기술기업 억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을 볼 때 트럼프 2.0 행정부에서는 수출통제 이외에 투자규제, 금융제재 등 여러 가용한 통제 수단을 총동원하여 중국의 영향력 내지 기술력을 억제할 것으로 예측된다. 투자규제 측면에서는 기존 투자규제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미국의 핵심기술, 인프라, 민감정보에 중국이 접근할 수 없도록 심사를 강화하는 경향이 지속될 것이고, 중국으로의 전략물자 수출은 엄격한 수출허가 심사를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9) 미국산 포함비율에 따라 수출허가 신청 의무를 정하는 기준인 최소편입비율(De Minimis Rule)을 중국에 대해 기존 25%에서 10%로 강화할 수도 있음 (중요기술의 경우 0% 초과 시 통제) - The Heritage Foundation(2023), “Project 2025 Presidential Transition Project - 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 P. 672, ‘23.9.

2) Entity 기반의 통제 중점

트럼프 1.0 행정부에서 Entity List를 적극 활용하여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 아래 최초로 Entity List 기반의 해외직접제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s, FDP) 통제 수단을 도입하였다. 당시까지 FDP는 일정 사유(WA의 통제리스트, 군용, 위성)로 통제되는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된 제품이 특정한 국가 그룹에 소속된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 통제하고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 1.0 행정부는 새로운 종류의 FDP를 도입하면서 Entity List에 등재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 기술을 특정하고 해당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은 일체 해당 등재자로 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하였다. 이 새로운 종류의 FDP는 특정 기업을 Entity List에 등재하고 FDP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기만 하면 전세계의 기업들이 해당 기업과 일체 거래할 수 없게 하였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어떤 기술을 목표로 할지만 정해지면 Entity List에 등재하고 관련 기술을 지정하기만 되는 신종 FDP가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FDP와 Entity list의 연계는 바이든 행정부에도 이어져,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시 Entity list의 각주 4 및 5와 연계된 FDP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트럼프 1.0 행정부가 중국의 거대 통신 기업인 화웨이(Huawei) 등을 대상으로 다수의 기업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재하고 등재자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를 가하는 Entity List 기반의 수출통제를 실시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트럼프 2.0 행정부는 단기적으로 기존의 엔티티 기반 통제를 강화하면서 더 많은 기업을 목록에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강력하고 전반적인 관세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이를 시행할 때 그로 인한 정책적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단기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중국이 對美 수출을 줄이고 對美 수입을 늘려가는 조정 과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수출통제를 일시에 부과하기 보다는 단기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첨단기술에 초점을 맞춰, 특정 우려기업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새 행정부 출범 후 당분간은 우려거래자에 등재되는 중국 기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USCC)¹⁰⁾의 2023년 연례보고서에서는 Entity List에 없는 제3자 중개자를 통한 수입으로 통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목록 기반의 통제가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트럼프 2.0 행정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재자, 특히 중국 기반의 우려 기업을 다수 등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더 광범위한 수출통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0) 미국 의회가 2000년 10월에 설립한 초당적 자문기구로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경제 관계가 국가안보에 갖는 의미에 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내며 중국 관련 입법과 정책에 대한 권고를 제시함.

3) 신속한 독자 통제 위주 수행

트럼프의 대외정책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한 거래 중심의 동맹관에 기초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따라 수출통제 공조의 양상이 지금과 상당히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트럼프 1.0 행정부에서는 동맹국을 대상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무역 분쟁 등 일련의 일방주의적인 행보를 보였다.¹¹⁾ 해외 주둔 미군 감축, NATO 탈퇴, 동맹국의 방위 분담금 증액 요구 등 동맹국들에게 혜택을 주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대외정책 기조가 된다면¹²⁾ 수출통제 분야에서도 동맹국들에게 분명한 의무 분담을 요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0 행정부에서는 1.0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바와 같은 독자적 수출통제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동맹국에 대한 수출통제 동참 압박이 더 커질 것이다. 미국은 국가안보가 위협되는 상황 속에서 동맹국들이 동참할 준비가 될 것을 기다릴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 바¹³⁾, 트럼프 2.0 행정부는 초기에 상당히 신속하게 독자 통제를 구사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동맹국이 동참하도록 강력히 압박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요컨대, 트럼프 2.0 행정부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동맹국과의 협력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수출통제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나¹⁴⁾, 수출통제 분야에서 협력하는 국가들에게 확실한 의무와 혜택을 부과하는 '거래 중심적' 동맹관에 기반하여 수출통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4 | 트럼프 2.0 행정부 무역안보 전략 및 향후 전망

구분	전략	전망
對중국 전략	디커플링(Decoupling) 중국은 미국의 최대 적으로서 중국의 '민군 융합 전략 저지' 목표	1) 통제 분야의 확대 범용 사양의 품목까지 확대, 신형기술(AI, 바이오, 에너지, 항공우주 등) 통제 확대, 중국의 핵심광물 통제 확대 2) 통제 메커니즘의 강화 및 연계 재수출통제 범위 확대, 국가군 설정 변경, 처벌기준의 강화, 통제 수단 간·부처별 리스트 간 연계 3) 경제블록화의 심화와 수출통제의 총돌 특정국 타겟팅, 수출통제 역외적용, 수출통제 법령의 총돌
통제 타겟	(단기) Entity 확대 → (장기) 첨단 기술/산업 통제 우회 차단을 위한 중국 정부 및 공산당 관련 기업 대상 통제 강화	
수출통제 공조	거래 중심적 동맹관에 기반한 협력 신속한 독자 통제 도입 → 협력시 동맹국가에게 의무와 그에 상응하는 혜택 부과	

11) 민정훈(2024), '미국우선 대외정책 2.0'의 주요내용 및 함의, IFANS FOCUS, 2024.7.12., P.2.
 12)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무임승차를 비판하며, 한국, 일본 등 동맹국 관계에서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입장임. 또한 북한 및 이란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대화과 협상'을 통한 통합접근을 시도할 것임 - 양욱 외(2024), "2024년 미국 대선 후보 안보 분야 공약의 특징과 의미", 이슈브리프, 아산정책연구원, '24.10.14.
 13) The Heritage Foundation(2023), Project 2025 Presidential Transition Project - Ma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 2023.9.
 14)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對중국 수출통제를 위한 다자간 체제와 모델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며, 더 많은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II 2025년 무역안보 Outlook: 관찰과 전망,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부터는 “무역안보관리원 교육관(<https://edu.kosti.or.kr/>) >전문자료 >전문
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